

## 근로복지공단 별정직 본부장 모집공고

탁월한 안목과 역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할 열정을 갖춘 별정직 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□ **공모직위:** 1명(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)

□ **임명기간:**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, 연임 가능 (단, 정년은 60세임)

※ 임용기간 중 본부장의 수행업무 조정에 따라 임용직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연임될 경우에는 일반직 1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

□ **주요직무**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

-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
-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업무
- 산재심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
- 기타 직제규정에서 정한 소관업무

□ **보수:** 공단 「보수규정」 등 제규정에 따름

□ **자격요건**

○ 채용자격기준

- 공무원 3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4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
- 공공기관에서 집행간부(이사 또는 본부장 상당직급)로 재직한 자
-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

- 근로복지공단 1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 - 관련분야\* 4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서 상장기업 부장급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- \* (관련분야) 노동 및 산업관련 복지, 행정, 경영, 조직, 인사관리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

○ 인사규정 제14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(첨부 1 참조)

## □ 전형방법

- (서류심사)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한 후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대상자로 선정
- (면접심사) 본부장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추천
- (최종합격자 결정) 본부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결정

## □ 제출서류

-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(첨부 2 소정양식)
  - 지원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는 공단 홈페이지([www.comwel.or.kr](http://www.comwel.or.kr))·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·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([www.gojobs.go.kr](http://www.gojobs.go.kr))·공공기관알리오([www.alio.go.kr](http://www.alio.go.kr))에서 내려 받아 사용
-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
    <이하 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본인 면접 후 제출>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석·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)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(초본은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)
- 기타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## □ 전형일정

- 서류접수기간: 2025. 11. 18.(화) ~ 12. 2.(화) 12:00까지
  - 접수장소: (우 44428)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7층 인재기획부
  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   - ※ 마감일 12:00까지 공단 인재기획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, 토·일요일(공휴일 포함)에는 접수 불가
  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: 2025. 12. 9.(화)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
- 면접심사 일시: 2025. 12. 11.(목)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12. 16.(화)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  - ※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(변경 시 개별 통지)

## □ 기타사항

-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인재기획부(052-704-7073, 70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18일

**근로복지공단 이사장**

## [붙임] 채용 결격사유

### 인사규정 제14조[결격사유]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- 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  - 6의4.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9.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